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(최재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7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0. 10.

발의의원 : 최재규 의원

곽동환 의원, 전홍배 의원

1. 폐지이유

「수의사법」 제22조에 따라 공수의에 대한 수당·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(‘12.1.26. 제정·시행)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기관위임사무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 :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」를 폐지함

3. 폐지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수의사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예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예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수의사법」(2022. 1. 4. 일부개정, 2023. 1. 5. 시행)

제21조(공수의) ① 시장·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,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.

1. 동물의 진료
2. 동물 질병의 조사·연구
3.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
4. 동물의 건강진단
5.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
6.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·군수가 지시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[이하 “공수의(公獸醫)”라 한다]는 시장·군수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22조(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) ① 시장·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제30조(지도와 명령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·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□ 「수의사법 시행규칙」(2023. 4. 27. 타법개정·시행)

제22조의14(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)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·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

[별표 1의2] 비용의 지급기준(제22조의2 관련)

1. 수의사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주간근로인 경우: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동원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금액(1일 8시간 근로 기준)

나. 야간·휴일 또는 연장근로인 경우: 가목에 따른 금액에 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

다. 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30조에 따른 여비

2. 시설·장비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소모품의 경우: 구입가 또는 지도·명령 당시 해당 물건에 대한 평가액 중 작은 금액

나. 그 밖의 장비의 경우: 장비의 통상 1회당 사용료에 사용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동원된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중 작은 금액